24년 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

☐ **사업기간** : 2024. 3. 4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
☐ **지원대상** :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중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, 연소득(세전) ①(청년) 5천만원, ②(청년 외) 6천만원, ③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[신청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]세대 임차인

*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한국주택금융공사(HF),서울보증보험(SGI)

*청년 : 19세~39세 이하/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/ ***기준일 : 신청일**

☐ **제외대상** : 재외국민,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,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

☐ **지원내용** :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**(최대 30만원)**

- 청년 임차인, 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
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

☐ **신청방법** : *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**

* 기혼자에 한하여 배우자 대리신청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)가능

☐ **구비서류**

서 류 명	특이사항
▸ 보증료 지원 신청서 ▸ 신분증 ▸ 서약서	- 신청인 본인 작성
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▸ 임대차계약서 ▸ 신청인(가입자) 통장 사본	- 신청인 본인 통장만 가능 * 배우자 대리신청시, 가입자 명의 통장 제출
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▸ 주민등록등본 ▸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자 포함) 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배우자 포함) ※ 소득이 없어 경우,'**사실증명**(신고사실없음)'제출	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-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- 정부24 발급가능

☐ **기타(유의) 사항**

-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- 허위·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 받은 경우 또는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.

☐ **문의처**

보증가입 관련 문의	▸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(문의) 1566-9009 ▸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(문의) 1688-8114 ▸ SGI서울보증 (문의) 1670-7000
사업내용 문의	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-0001
신청·접수 문의	전주시 건축과 063-281-2445 / 거주지 주민센터